

보상위원회 운영규정

2022. 12. 14. 제 정
2024. 02. 15. 개 정 [1]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루닛 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이사보수 결정의 객관성,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는 총 2인의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의 수가 1인 이상이 되도록 한다.
- ③ 위원회 이사의 임기는 위원회 이사 선임 후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 소속의 이사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(본조 제2항의 구성에 미달한 경우)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참여에 결격사유가 없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신규 선임한다. 다만, 신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이사를 선임하고, 이어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신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
- ⑤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까지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의결로 이사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. 선임된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의 진행을 맡는다. [1]
-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먼저 선임된 위원의 순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선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제5조(책임) [1]

- ① 회사의 이사보수 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되, 기본급, 인센티브 보상, 그리고 주식 기반 보상 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계획이 주주 이익을 촉진하고 회사의 기술적 목표와 부합하는지 확인한다.
- ② 매년 이사보수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목표 및 목적을 검토하고 승인하며, 이러한 목표 및 목적을

바탕으로 그들의 성과를 평가한다.

- ③ 해당되는 경우,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기본급, 인센티브 보상, 그리고 주식 기반 보상을 결정하고 승인한다.
- ④ 이사회에게 사외이사에 지급되는 현금 및 주식 기반 보상을 제안하며,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업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.
- 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회사의 보상 정책에 관한 어떠한 공개 사항도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는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본 규정을 시행하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활동을 수행하며, 정책과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의 소집)

- ① 위원회는 격년간 혹은 심의, 결의 대상 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[1]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를 정하고 늦어도 그 24시간 전까지 이를 각 소속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 소집한다.
- ④ 제3항의 소집통지는 문서, 전자문서로써 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.
- ⑤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3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⑥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.
- ⑦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7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결의사항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.

- 1. 주주총회에 상정할 등기이사의 보수한도에 관한 사항

- 2. 등기이사 보상 체계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이사보수 관련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9조(관계인의 의견 청취)

- 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0조(통지의무)

- 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위원회 결의사항의 재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- ③ 단, 결의사항을 통지 받은 이사가 그 사항 통지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위원회 결의사항의 재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사는 원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- ④ 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11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,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2조(간사)

-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하고, 관련사무를 관장한다.

제13조(보상 및 경비) [1]

-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위원회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. 이는 위원장에 대한 추가 보상을 포함할 수 있으며, 해당 보수에는 착수금 혹은 회의당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으며, 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는 대로 지급된다.
- ②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14조(기타)

위원회는 이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지침으로 제정·시행할 수 있다.

제15조(규정의 개폐)

-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- ②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, 이사회 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(2022.12.14.)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2.15.) [1]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